

글로벌 데이터 관련 정책 동향에 비추어본 데이터 3법 이슈 분석

주광일, 박진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ju@kisti.re.kr, ntoskr@kisti.re.kr

Analyzing issues of data 3 law in light of global data-related policy trends

Ju Gwang il, Park Jin Hyoung

Korea Instit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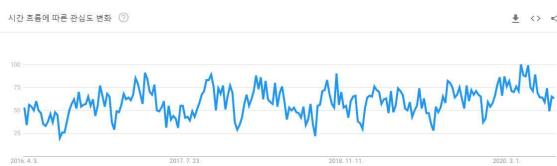
요약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됨으로 인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 및 국내 데이터 관련 주요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추진 전략 및 정책을 조사하여 데이터 3법에 관한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법정부적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경제 프레임워크 통해 역할별 주요 이행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이슈별 추진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I. 서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는 전 산업에 걸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David Newman에서 ‘데이터 경제’¹⁾의 개념이 등장[1]하면서 현재까지 데이터 관련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세계의 데이터 시장 규모가 17년도에 1,507억 달러에서 20년에는 2,100억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전 세계의 시간 흐름에 따른 데이터 경제에 대한 관심도는 구글 트렌드를 통하여 일부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중 관심도의 경우 가장 높은 검색어를 비교하여 해당 검색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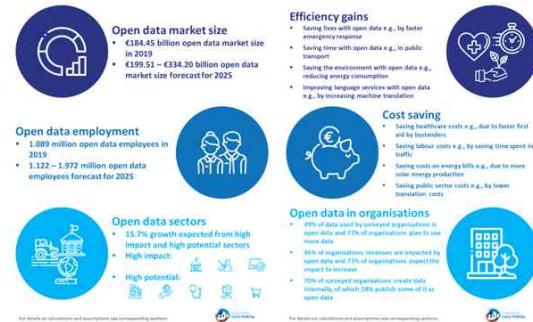
[그림 1] Data Economy 검색량에 대한 시간별 추이(구글트렌드, 2016-2020)

이처럼 데이터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기존 데이터를 수집·보관만 하는 수준에서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발전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데이터 3법 관련 개정이 통과되어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018.11.15. 인재근 의원 발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3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데이터경제란 Newman의 정의에 따르면 응용프로그램, S/W, H/W의 경제가 아닌 빅데이터(big data), 오픈데이터(open data), 연결데이터(linked data) 등 데이터의 경제적 측면이 새로운 경쟁 우위를 주도하는 시대(era)의 일부를 의미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관련 국제사회는 유럽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U를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2018년 5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여 데이터 보호를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관련 주요 이슈사항을 선행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U에서는 데이터 유형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①연구(과학)데이터 ②공공(정부)데이터 ③개인정보 ④산업 보유 데이터 등 4대 유형별 데이터 경제 정의를 토대로 경제전략을 수립하였다[3].



[그림 2] Open data의 정의 및 보고서 요약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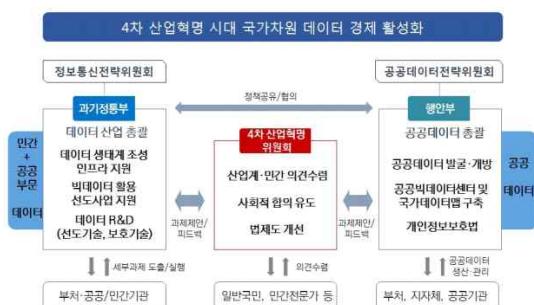
최근 EU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간하였고, 유럽 데이터 전략의 주요 내용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데이터 경제 발전 저해, 데이터로 인한 기업간 시장 지배력의 불균형, 데이터 품질 저하로 인한 상호 운용성 및 품질 확보가 필요, 데이터 거버넌스 부재, 데이터 관련 인프라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 간 통합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기업 및 공공분야 데이터 역량과 인프라의 확충, 개개인의 데이터 권리 강화, 데이터 관련 중소기업 투자 및 공공 목적의 데이터 공간 확보 차원에서의 전략을 도출하였다[4].

일본에서는 세계 최첨단 디지털국가선언 및 민관 데이터 활용추진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고, 일본 사회과제와 Society 5.0에 적합한 디지털화와 세계 최첨단을 목표로 한 e-Japan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 보급, 디지털화로 변화하는 생활 및 경제활동 세계 최초의 사회실용화 프로젝트 등 디지털 기술 실용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5].

미국은 ITIF(정보기술혁신재단)으로부터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연방 정부 법안 제정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모든 종류의 데이터(GDPR, APEC, OECD, HIPAA, CCPA, CPBR)를 포함하는 연방정부의 프라이버시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의 종류와 데이터 수집기관 전체를 기반으로 데이터 보호 규정을 수립하는 내용을 진행하고 있다[6].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련 각국의 입법과 관련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내에서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데이터 관련 법규 및 정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공데이터, 정보,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규제체계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 및 법적 근거가 미흡한 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16년도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베이너리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였으며 데이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도적인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20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와 함께 데이터 관련 정책공유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데이터 산업과 공공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주요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3] 법정부 데이터 대응체계(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다음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으로 정부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을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첫째,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였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개인정보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여 데이터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 데이터 활용에 주안점을 둔 법령을 개정하였다.[7]

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이 둘의 없이 활용 가능 (EU GDPR 반영) ① 통계작성 (상당수 목적 포함) ② 연구 (상당수 목적 포함)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복원 불가능한 정도로)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그림 4] 개인정보의 세부 정의(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둘째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일원화 하였다. 공공분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조사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단일화 하였다. 이는 데이터 전문위원회 기능과 위상을 인정함과 동시에 총리급 위원회로 격상하여 중

앙부처의 정책 수립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8]

셋째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세부 개념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데이터 활용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을 명확화 함으로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정의를 세분화 하였다.[9] 이러한 데이터 3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보호에서 활용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관련 주요 입법 사례 및 국가별 대응 정책을 조사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데이터 선진국에 이미 데이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정책을 정비하여 일부 분석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늦게 범부처적인 전문위원회를 출범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데이터 3법에 대한 개정이 완료되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 3법은 향후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기반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데이터 경제 프레임워크 구성하여 데이터 수요기업이 내·외부 수단을 통하여 데이터를 활용하고 국가에서는 분야별 데이터 전문기관 육성 및 전문화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함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ACKNOWLEDGMENT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주요사업 과제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 [1] David N."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Gartner Research, Mar 2011
- [2]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결안건, Jun 2018.
- [3] European data portal.”The Economic Impact of Open data”, 2020
- [4] EU Commission Report.”A European strategy for data”, Feb 2020
- [5] 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rs Japan.” 世界最先端デジタル
國家創造宣言 ·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計画”, Jun 2019
- [6] ITIF.”A grand bargain on data privacy legislation for america”, Jan 2019
- [7]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21호”, 2018.11.15.
- [8]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22호”, 2018.11.15.
- [9] 국민참여입법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16636호”, 2018.11.15.